

의안번호	2212217
의 퇴 인	한기호의원
회 답 일	2025.9.9.
추 계 번호	25D44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 참전명예수당 100% 수준으로 지급 시,

총 4조 6,494억 300만원(연평균 9,298억 8,100만원)

○ (시나리오2) 참전명예수당 70% 수준으로 지급 시,

총 3조 3,231억 6,200만원(연평균 6,646억 3,2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참전명예수당의 100% 수준 지급)	878,150	905,540	931,376	955,717	978,620	4,649,403	929,881
시나리오2 (참전명예수당의 70% 수준 지급)	628,400	647,617	665,712	682,727	698,706	3,323,162	664,63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4(기념사업)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의료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제1항)	

		국가는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4	안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의4(기념사업)	×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수행 기념사업의 규모와 범위, 국고보조의 비율을 추정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2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0	—
3	안 제7조(의료지원)	0	—
4	안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원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재정소요를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인원은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소급적용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개정안 시행 이후 신규 발생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인원을 합산하여 추정함
 - 소급적용 수권배우자 인원 추정: 국가보훈부 추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인원(2023년 기준, 149,548명)에 무공수훈자 수권배우자 사망률(2023년 기준 8.06%)¹⁾을 적용하여 추정

[표 2] 소급적용 수권배우자 인원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3	2027	2028	2029	2030	2031
소급적용 수권배우자	149,548	106,856	98,243	90,325	83,045	76,351

주: 국가보훈부 추정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인원(2023년, 149,548명)에 무공수훈자 수권배우자 사망률(2023년 기준 8.06%)을 적용하여 추정함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신규발생 수권배우자 인원 추정: 참전유공자 연도별 사망 추정 인원에 최근 5년 무공수훈자 배우자 비율 평균(76.95%)²⁾을 적용하여 추정

[표 3] 신규발생 수권배우자 인원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감률
참전유공자	173,733	161,577	146,932	132,479	120,190	109,614	△8.80%
신규발생 수권배우자	참전사망자	—	—	—	12,289	10,576	
	배우자비율	—	—	—	76.95%	76.95%	
	신규발생	—	—	—	9,456	8,138	
	누계인원	—	—	—	9,456	16,832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참전유공자	99,968	91,171	83,148	75,832	69,159	63,073	△8.80%
신규발생 수권배우자	참전사망자	9,646	8,797	8,023	7,317	6,673	
	배우자비율	76.95%	76.95%	76.95%	76.95%	76.95%	
	수권배우자	7,422	6,769	6,173	5,630	4,683	
	누계인원	22,898	27,821	31,752	34,823	37,151	

주: 1. 참전사망자 인원은 전년도 참전유공자 인원에서 해당연도 참전유공자 인원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수권배우자는 참전유공자의 연도별 사망 인원에 배우자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3. 누계인원은 전년도 누계인원에 무공수훈자 수권배우자의 사망률(2023년 기준 8.06%)을 적용한 인원 과 해당연도 신규발생 수권배우자 인원을 합산하여 추정함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무공수훈자 수권배우자 사망률: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무공수훈자 수권배우자	등록인원	31,907	32,465	31,735	30,732
	사망인원	1,631	1,745	2,463	2,557
	사망률(%)	—	5.47	7.59	8.06

자료: 국가보훈부

2) 무공수훈자 배우자 비율: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무공수훈자	등록인원	18,071	16,516	14,830	14,049	15,106
	배우자 인원	14,780	12,661	11,345	10,123	11,624
	배우자 비율(%)	81.79	76.66	76.50	72.05	76.95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소급적용 수권배우자와 신규발생 수권배우자를 합산하여 개정안에 따른 수권 배우자 인원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개정안에 따른 수권배우자 인원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수권배우자	소급적용	106,856	98,243	90,325	83,045	76,351
	신규발생	27,821	31,752	34,823	37,151	38,840
	합계	134,677	129,995	125,148	120,196	115,191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본 추계에서 수권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단가는 참전유공자 대비 100%과 70% 수준으로 구분하되, 최근 5년(2021~2025년) 참전명예수당 단가 상승률³⁾을 적용하여 추정함

[표 5]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 2027~2031년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515	551	590	631	675
수권배우자	참전유공자의 100%	515	551	590	631	675
	참전유공자의 70%	361	386	413	442	4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에서 의료지원(안 제7조)과 보훈재가복지서비스(안 제8조의6)의 추가 재정소요 산출 시, 수진횟수, 감면진료비 단가,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단가는 다음의 변수를 적용하여 추정함
 - 수진횟수: 보훈병원 0.6회(2024년 60% 감면대상자 수진횟수 적용), 위탁병원 8.0회(2024년 60% 감면대상자 수진횟수 적용)
 - 감면진료비 단가: 2024년 60% 감면대상자 감면진료비 단가(보훈병원 74,035원, 위탁병원 25,202원)에 최근 5년 연평균증가율⁴⁾을 적용

3)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및 단가상승률: 2019~2025년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단가상승률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300	320	340	350	390	420	450	6.99%

자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4) 감면진료비(60%) 단가: 2020~2024년

[표 6] 감면진료비 단가 추정: 2027~2031년

(단위: 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감면진료비 단가	보훈병원	83,588	87,039	90,632	94,374	98,270
	위탁병원	28,174	29,241	30,348	31,497	32,689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율과 지원 단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율(2025년 7월말 기준) 1.58%⁵⁾를 적용하고, 2024년 지원 단가 3,522천원에 최근 3년간 연평균증가율⁶⁾을 적용

[표 7]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단가 추정: 2027~2031년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단가	4,001	4,175	4,356	4,545	4,742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보훈병원	62,974원	64,394원	66,795원	67,249원	74,035원	4.13%
위탁병원	21,721원	20,261원	24,360원	22,756원	25,202원	3.79%

자료: 국가보훈부

- 5)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율: 2025.7.말 기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 대상 인원(A)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인원(B)	지원율(C=B/A)
564,084명	8,939명	1.58%

자료: 국가보훈부

- 6)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단가: 2022~2024년

구분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단가	3,235천원	3,439천원	3,522천원	4.34%

자료: 국가보훈부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안 제6조)

-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기간 동안 수권배우자 추정 인원에 참전명예수당 단가(참전명예수당의 100%, 70%)를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8]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수권배우자	소급적용(A)	106,856	98,243	90,325	83,045	76,351	—
	신규발생(B)	27,821	31,752	34,823	37,151	38,840	—
	소계(C=A+B)	134,677	129,995	125,148	120,196	115,191	—
시나리오1 (참전명예수당의 100% 지급, 천원)	월지급액(D)	515	551	590	631	675	—
	개월수(E, 개월)	12	12	12	12	12	—
	추가재정소요(F=C×D×E)	832,501	859,742	885,548	909,968	933,047	4,420,806
시나리오2 (참전명예수당의 70% 지급, 천원)	월지급액(G)	361	386	413	442	473	—
	개월수(H, 개월)	12	12	12	12	12	—
	추가재정소요(I=C×G×H)	582,751	601,819	619,884	636,978	653,133	3,094,565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참전유공자 배우자 의료지원(안 제7조)

-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의료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수권배우자 인원예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수진횟수(보훈병원 0.6회, 위탁병원 8.0회)와 연도별 감면 진료 단가를 각각 적용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9] 참전유공자 배우자 의료지원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수권배우자	소급적용(A)	106,856	98,243	90,325	83,045	76,351	—
	신규발생(B)	27,821	31,752	34,823	37,151	38,840	—
	소계(C=A+B)	134,677	129,995	125,148	120,196	115,191	—
보훈병원	수진횟수(D)	0.6	0.6	0.6	0.6	0.6	—
	감면진료 단가(E, 원)	83,588	87,039	90,632	94,374	98,270	—
	소계(F=C×D×E)	6,754	6,789	6,805	6,806	6,792	33,946
위탁병원	수진횟수(G)	8.0	8.0	8.0	8.0	8.0	—
	감면진료 단가(H, 원)	28,174	29,241	30,348	31,497	32,689	—
	소계(I=C×G×H)	30,355	30,409	30,384	30,286	30,124	151,558
추가재정소요(J=F+I)		37,110	37,198	37,189	37,092	36,916	185,505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안 제8조의6)

-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수권 배우자 인원(인원)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율(1.58%)과 연도별 지원 단가를 각각 적용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수권배우자를 대상으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10]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수권배우자	소급적용(A)	106,856	98,243	90,325	83,045	76,351	—
	신규발생(B)	27,821	31,752	34,823	37,151	38,840	—
	소계(C=A+B)	134,677	129,995	125,148	120,196	115,191	—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지원율(G)	1.58%	1.58%	1.58%	1.58%	1.58%	—
	단가(H, 천원)	4,001	4,175	4,356	4,545	4,742	—
추가재정소요(J=F+I)		8,539	8,600	8,639	8,657	8,657	43,092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 까지 5년간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 참전명예수당 100% 수준으로 지급 시,

총 4조 6,494억 300만원(연평균 9,298억 8,100만원)

○ (시나리오2) 참전명예수당 70% 수준으로 지급 시,

총 3조 3,231억 6,200만원(연평균 6,646억 3,200만원)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나리오1 (참전명예수당 100% 수준 지급)	참전명예수당 (안 제6조)	832,501	859,742	885,548	909,968	933,047	4,420,806
	의료지원 (안 제7조)	37,110	37,198	37,189	37,092	36,916	185,505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안 제8조의6)	8,539	8,600	8,639	8,657	8,657	43,092
	추가재정소요	878,150	905,540	931,376	955,717	978,620	4,649,403
시나리오2 (참전명예수당 70% 수준 지급)	참전명예수당 (안 제6조)	582,751	601,819	619,884	636,978	653,133	3,094,565
	의료지원 (안 제7조)	37,110	37,198	37,189	37,092	36,916	185,505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안 제8조의6)	8,539	8,600	8,639	8,657	8,657	43,092
	추가재정소요	628,400	647,617	665,712	682,727	698,706	3,323,16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참전유공자 사망, 무공수훈자 배우자 비율과 배우자사망률, 참전 명예수당·의료지원·보훈재가복지서비스 단가 등의 과거 추이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수권배우자 인원·배우자 비율·사망률, 지원단가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